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조성을 위한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예외 사유)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경조 금품 수수 불가능 제외 사유)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공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자(협력업체, 유관기관 등)의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과 관련 FAQ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 (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 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가 가능한지

경조사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경조사 통지 시 직위·직급 기재는 제한되지 않음.